# 무용진흥법안 (배현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720

발의연월일: 2025. 3. 7.

발 의 자:배현진·김형동·고동진

정성국 • 우재준 • 진종오

박형수 · 김소희 · 신성범

박정훈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

한국무용, 현대무용, 발레 등으로 대표되는 '무용'은 우리 문화예술의 대표적인 축으로 자리잡아 왔으며, 최근 한국 무용수들이 세계무대에서 주역으로 활약하는 등 한국의 무용에 대한 세계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.

하지만 무용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 지원은 아직 미흡한 상황으로, 미술·문학·국악 등 타 문화예술 분야는 각 개별 법률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무용은 「문화예술진흥법」과 「공연법」상의 한 장르로만 포함되어 있는 실정임.

또한, 무용 공연을 위한 전용 국립 극장과 무용가들의 창작·공연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없어 무용계에서는 오랜 기간 무용 발전에 집중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해왔음.

본 제정안은 국내 무용과 무용문화산업의 발전, 그리고 우리 무용의

세계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골자를 세우고 국립무용 원 등 무용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여 우 리 무용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든든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#### 주요내용

- 가.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무용 진흥 및 무용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은 5년마다,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, 이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(안 제5조 및 제6조).
- 나.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, 전문인 력의 양성,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, 무용 관련 단체의 육성· 지원 등 각종 지원시책을 규정함(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).
- 다. 무용창작을 지원하여 무용 향유 문화를 활성화하고, 무용문화산업을 육성·지원하도록 함(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).
- 라. 무용의 진흥 및 무용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무용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무용의 날을 지정하도록 함(안 제14조).
- 마.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무용의 보급 및 발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국립무용원을 두고 무용에 관한 조사 및연구, 무용 공연의 제작 및 보급 지원, 무용자료의 수집·제공·전시 및 관리, 무용교육 및 자료 개발 및 국내외 무용단체 간 교류및 협력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, 국립무용원 소속으로

지방무용원을 둘 수 있도록 함(안 제15조).

### 무용진흥법안

제1조(목적) 이 법은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무용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무용"이란 한국무용, 현대무용, 발레 등 사상이나 감정 등을 신체로 표현한 예술을 말한다.
- 2. "무용문화산업"이란 무용과 관련 있는 문화상품(무용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·무형의 재화·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)의 기획·개발·제작·생산·유통·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.
- 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용을 진흥하고 무용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・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무용 진흥 및 무용문화산업의 활성화에 관

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- 제5조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 마다 무용 진흥 및 무용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(이하 "기 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무용 진흥 및 무용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
  - 2. 무용 진흥 및 무용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
  - 3. 무용 교육 및 무용 향유 증진에 필요한 사항
  - 4. 무용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
  - 5.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
  - 6.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
  - 7. 그 밖에 무용 진흥 및 무용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  -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무용 진흥 및 무용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 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·법인·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- 제6조(실태조사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무용 진흥 및 무용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 다만,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  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 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관련 기관·법인·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·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7조(지식재산권의 보호) ① 정부는 무용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무용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  - ② 정부는 무용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 - 1. 인터넷 등 전자기술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처
  - 2. 무용 관련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
  - 3. 그 밖에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사항
  -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

있다.

-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무용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제8조(전문인력의 양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있다.
  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, 대학, 그 밖의 기관을 무용 전문인력양성기관(이하 "양성기관"이라 한다)으로 지정하고 교육에 필요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 -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  - 1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  - 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비용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
  - 3.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
  - 4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 한 경우

-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.
- ⑤ 제2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,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(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
- 제10조(무용 관련 단체의 육성·지원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무용의 진흥을 위하여 무용 관련 단체를 육성·지원할 수 있다.
  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무용 관련 단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11조(무용 창작 지원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무용과 다른 분야 콘텐츠와의 융합 및 연계 등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12조(무용 향유 문화 활성화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일 상생활에서 무용을 누릴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에게 무용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용 교육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있다.
- 제13조(무용문화산업의 진흥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무용문화산업의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다.

- 제14조(무용의 날) 무용의 진흥 및 무용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무용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무용의 날을 지정한다.
- 제15조(국립무용원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소속하에 무용의 보급 및 발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국립무용원을 둔다.
  - ② 국립무용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- 1. 무용에 관한 조사 및 연구
  - 2. 무용 공연의 제작 및 보급 지원
  - 3. 무용자료의 수집 제공 전시 및 관리
  - 4. 무용교육 및 자료 개발
  - 5. 국내외 무용단체 간 교류 및 협력 지원
  - 6. 그 밖에 무용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  -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무용의 보급 및 발전 등을 위하여 국립무용원 소속으로 지방무용원을 둘 수 있다.
  - ④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6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 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

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관 또는 관련 기관·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